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51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 이유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교통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안 제4조)
-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8조)
- 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공사시행시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 및 「도로법」 제8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입법예고(2006.10.27 ~ 11.16)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제17조의2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2차로(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 2차로 미만이라도 포함) 이상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점용기간이 구도는 15일 이하,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의 교통소통대책 심사로 자문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84조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 또는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